

(國)(外)(事)(件)-1

## 拒絕 定不服審判請求期間事件

&lt;日本東京高法 1980年 8月 27日 判決, 1980年(行)29號&gt;

## 1. 原告:X

## 2. 被告:Y(特許廳長)

## 3. 判決主文

X의 請求를 棄却한다.

訴訟費用은 X의 負擔으로 한다.

## 4. 事件概要

X는 메리아스編機의 編針에 관한 支持案내裝置의 發明에 대하여 1975년 6월 6일字로 特許出願한바 1979년 1月 11日字로 拒絕査定되어 同年 2月 22日에 이 拒絕査定騰本을 받았으며 1979년 6월 29일에는 審判을 請求하여 特許廳 1979年 審判第7308號 事件으로서 審理되었으나 1979年 12月 25日 審判請求를 棄却한다고 審決되었고 그 審決騰本이 1980년 1월 23일에 X에게 송달되었다.

그 審決理由要旨인즉 本願發明은 1975년 6월 6일의 出願에 관한 것으로서 1979년 1월 11일자로 거절 사정되어 그 등본이 1979년 2월 22일에 X의 代理人에게 송달된 것은 大阪南郵遞局의 郵便物配達證明書에 의해 明白하다.

이 거절사정에 대한 審判請求는 同査定騰本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日以内인 1979년 3월 24일까지 해야한다. 그러나 X가 事業關係로 1979년 1월 27일에 韓國에 旅行하여 同年 6月 16日에 歸國함으로써 法定期間内에 審判請求를 할 수 없어 本件 審判請求를 1979년 6

월 29일에 하였다는 것이다.

特許法121條2項에 정한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理由」란 天災地變과 같은 客觀的理由에 의거 節次를 賦을수 없는 경우이외에 通常의 注意力이 있는 當事者가 最善의 주의로서도 더욱 請求期間을 經過시킬 수 밖에 없는 경우등을 가리키는 것이나 X의 事情은 최선의 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므로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결한 것이다.

즉 法定期間經過後의 不適法한 청구자라 하여 却下되었고 代理人은 同騰本을 X에 송달하였으나 X의 家族은 X個人에의 書信으로 짐작하고 開封하지 않은채 放置하였다가 X本人의 歸國後에야 拒絕査定事實임이 判明되었다 하여 審決取消를 위한 本訴에 이른 것이다.

## 5. 判決要旨

1) 이미 本件査定騰本의 송달이 適法的으로 執行된 以上 特許法에 말하는 30日의 期間은 이 送達日부터 進行되므로 이 기간 경과후의 날자인 1979년 6월 29일의 本件 審判請求不適法審決에 잘못이 없다.

2) X는 거절사정등본이 송달된當時 韓國에 여행중이었으며 訪韓中에 거절사정등본이 송달될 것을豫知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사정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이유」에 의해 期間内에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

었다고 主張하나 대리인 A에 대한 송달이 적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前述한 바와 같으며 X本人과 實相은 그 特許出願代理人과의 内部關係에 그친다.

또한 X의 주장은 内부관계에서의 指示의 不適切 혹은 連結 내재는 措處의 不充分에 彙着되므로 이로써 訟訴法에 規定하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이유」라고 할수는 없다.

3) 따라서 X의 本訴請求를 失當으로 보아 棄却한다.

## 6. 解說

X의 本訴請求는 처음부터 相對를 잘못 選定한 소송이며 失當이라 함은 當然하다는 衆論이다.

그러므로 本願發明에 대한 補正의 機會나 審判請求機會도 失期한結果가 되며 法定期間의 경과에 의한 救濟는 우선 絶對로 不可能에 가깝다는 經驗法則에서 X 또는 X 대리인의 책임이라하여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이 나온다는 것이다.

